

-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7월 2일
- 회부일자 : 2010년 7월 6일

3. 제안이유

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,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본청, 지역교육청, 소속기관 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소속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,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·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

- 1)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관장 사무에 "연구학교 및 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", "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", "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", "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"을 추가함
(안 제10조 제1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)

나.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 조정

- 1)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에 "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"을 추가함(안 제25조 제3호)

다.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할교육청 란 삭제

1) **별표 2, 별표 3, 별표 4, 별표 5, 별표 6**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관할 교육청 란을 삭제 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,

교육과학기술부 기능개편(안)을 근거로,

- 안 제10조에서 제1호를 보완하고,
- 제8호에 「각급학교 평가에 관한 사항」 제9호에 「인정도서 개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」 제10호에 「과학 및 정보화 관련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」을 신설하여,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사무를 재조정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,
- 안 제25조에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에 「영어영재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」을 신설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사무를 재조정 하였고,
-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된 별표2 내지 별표 6의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관할교육청 란을 삭제하는 등
-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,
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기능 강화에 따른 인력 보강 필요성은 없는지? 이에 대한 설명과,
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사무에 추가하는 "영어영재교육센터"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